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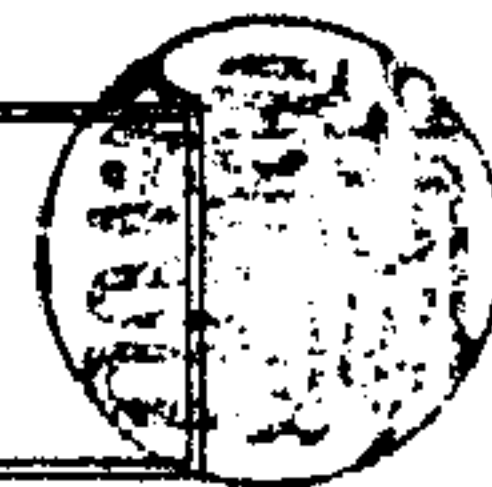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14 호
의 결 년월일	1999년 1월 (제 80 회)

의 사	결 항
원안가결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월일	1999. 1. 2 /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74
------	----

제출년월일 : 1999. 1. 2/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1. 제안이유

- '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 운영에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설립기관의 범위 (안 제2조 1항)
 -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함
- 연합협의회 설립금지(안 제2조2항)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단일직장내에서 당해직장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기관 스스로 기관운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 하는데 있음
 - . 따라서 연합회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임
- 가입범위의 제한(안 제3조1항)
 -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관리직의 노동조합 가입범 위를 제한하는 취지와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지휘감독의 직책에 보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 . 대부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 협의회 당사자이므로 직장협의회 의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

- 협의회 가입 탈퇴 자유(안 제6조3항4항)
 - .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봄
 - .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 한 것으로 봄
- 협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안 제8조1항)
 - . 협의회 대표자와의 협의위원은 당해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제한
- 회원의 의무(안 제12조 1항)
 - .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 준수의 의무,, 협의회 지시에 복종할 의무, 협의회에 참가할 의무등이 있음
-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안 제13조)
 -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3. 근거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포 ('98.2.24, 법률 제5516호)

4. 사전입법예고 : 해당없음 (제정)

붙임 1.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기타 참고자료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청원경찰)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서무담당)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사업소·읍면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장(이하“설립기관 의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회의 설립)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 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 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중(이하“설립중”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는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

④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회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회의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일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

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회원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인도청인

년 월 일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및근무부서,직급,성명,전화번호 기재) 각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명 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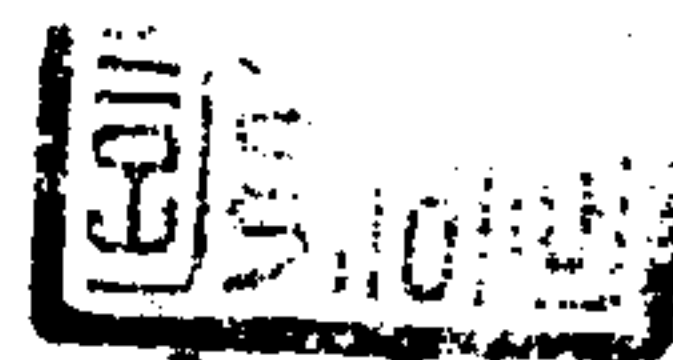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전문접수번호	10611
12월 24일	12월 24일

충 청 북 도

우(360-765)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호 (일)220-2207(2207) (청)2207/ FAX220/2240
 총무과 과장 신기철 / 총무담당 김진식 / 담당자 이재영

문서번호 총무12100- 2226
 시행일자 1998. 12. 24.(년)
 (경유)
 수신 처
 참조

선 결	구영수	지	
접 수	일자 98.12.26 시간 : 번호 4311	결 재	부장수 WJH
처리과	자치행정과	공 람	자치행정과 261114
담당자	구영수		사무담당 김진식

제목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규칙제정표준안 통보

1. 행자부 운영 12100-673(9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동규칙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
 니 제정·공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